

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2월 27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2월 27일

3. 개 정 이 유

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대상제 중 후보자 심사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청소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, 심사토록 하고 시상시기를 현실에 맞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실시하기 위함.

4. 주 요 골 자

○ 수상후보자는 시장, 군수,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추천하도록 한 것을 시장, 군수, 출장소장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고.

○ 청소년대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방법에 있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심사후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, 심사후 도지사가 결정토록 함.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청소년大賞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- 수상후보자는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이 직접 추천토록 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,
- 수상자의 심사에 있어 종전에는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심사의 능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, 이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수상자결정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,
- 大賞施賞은 매년 12월에 시행하던 것을 청소년의 달인 5월로 변경하려는 것 등으로,

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大賞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단일조례 운영 방법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.

6.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첨